

순천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2018. 7.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협동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과정”이란 대학원 학과(전공)간 또는 대학원 학과(전공)와 외부 연구 기관 및 산업체가 협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학·연·산(학·연, 학·산포함) 협동과정을 말한다.
2. “참여 학과”란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가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3. “참여 교수”란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3조(학위과정) 협동과정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① 협동과정의 설치 기준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요건에 따른다.

② 협동과정은 참여 학과, 참여 교수 및 기관 등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동과정 설치를 주관하는 학과(전공) 지정
2. 협동과정의 설치 사유 및 목적
3. 교육 목표 및 내용
4. 전임교원 확보 현황
5. 참여 학과 회의록, 참여 학과 및 기관의 동의서
6. 교육과정 편성표
7. 강의실, 행정실 등 공간 확보, 운영 인력 및 기타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운영 계획
8.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요구 사항

제5조(폐지) 총장은 협동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 학칙 개정의 절차에 따라서 모집단위를 폐지할 수 있다.

1. 재학생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2. 참여 교수 수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참여 학과가 1개인 경우
3. 기타 협동과정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교육과정 운영) ① 각 협동과정의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의 교육과정 중에서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편성한다. 단, 전체교과목의 30%안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은 참여 학과의 교과목을 참여 학과 수에 따라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 학과의 교과목은 협동과정에서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당해 참여 학과에서 개설 한다.

제7조(참여 교수) ① 참여 교수는 협동과정의 교수로 겸무하며, 협동과정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목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 참여 교수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총 학점은 해당 학위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참여 교수는 협동과정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주임교수) 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협동과정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각 협동과정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③ 주임교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행정지원) 행정은 주임교수가 소속된 학과(전공) 또는 참여 교수들이 협의 하여 지정한 학과(전공)에서 지원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각 협동과정에는 참여 교수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주임교수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참여 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주임교수는 참여 교수의 1/3 이상의 요청에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참여 교수, 참여 학과 및 참여 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외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7.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과정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